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917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9년 8월 7일
- 회 부 일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나. 추진근거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평생교육법」
- 조 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 평생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서울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평생학습 사업 추진,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및 모두의 학교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형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함.

라. 출연 사무내용

- 서울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 서울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연구,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평생교육 정책포럼 개최 및 평생학습 아카이브 기록물 발굴·수집
-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 서울시 문해교육 역량강화, 문해교육기관 전문인력 지원, 서울형 생활문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서울시 문해교육 성과공유회
-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확산, 뉴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
 - 시민참여형 학습공간 운영 및 혁신모델 전파,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운영, 모두의학교 학습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시민 문화서재 모두의책방 운영

마.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개요

- 본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 시설규모 : 331㎡(사무실, 회의실1, 강의실1)

- 모두의 학교

- 소재지 :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28길 42
- 시설규모 : 2,462.91㎡(마루교실, 소통방, 강당 등)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출연금액 : 8,269백만원 * 예산 편성과정에서 금액 변경 가능
 - 인건비 1,723백만원, 운영경비 1,241백만원, 사업비 5,464백만원, 예비비 295백만원

※ '20년 총 필요예산은 8,723백만원이나, 내부 유보금('18년도 결산잉여금) 454백만원을 감안하여 8,269백만원 요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편성

5.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2020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82억6천9백만원)을 출연하기 전에 「지방재정법」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임.

※ 서울시는 「평생교육법」²⁾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지원·조정, 분석·평가,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추진³⁾하고 있으며,

※ 진흥원은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계체계 구축, 연수, 상담, 정보제공, 학습동아리 육성·활동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 학습문화 확산 등⁴⁾의 사업을 수행하고, 모두의 학교,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음.

-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4.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5.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6.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8.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9.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
 10.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지원
 11.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12.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진흥원은 2015년 설립되어 2국 6팀, 총 47명(정규직 26명, 계약직 21명)이 서울시 출연금(56억3천9백만원, 2019년 출연금)과 수탁사업비(41억9천4백만원)를 포함하여 총 105억 6천 7백만원의 예산(2019년)으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의 정·현원 현황 〉

(단위:명)

구 분	계 (정원/현원)	일 반 직					계약직
		임원	1급	2급	3급	4급	
소 계	27/26	1/1	1/1	4/3	9/6	12/15	21
원 장	1/1	1/1	-	-	-	-	-
기획조정국	1/1	-	1/1	-	-	-	-
정책·사업팀	7/7	-	-	1/1	4/4	2/2	1
홍보·대외협력팀	4/4	-	-	1/0	1/1	2/3	2
모두의학교팀	9/8	-	-	1/1	2/0	6/7	-
경영지원팀	5/5	-	-	1/1	2/1	2/3	2
시민대학국	-	-	-	-	-	-	1
시민대학운영팀	-	-	-	-	-	-	7
시민대학사업팀	-	-	-	-	-	-	8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연혁 〉

- 2014. 3.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서울연구원 부설)
- 2014.10.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창립총회
- 2015. 3. 진흥원 이사 및 감사 임명, 재단법인 설립(독립법인)
- 2015. 4. 사무실 확장 이전(서초구 → 마포구/ 조직개편 1국3팀)
- 2015. 7. 한국교육개발원 업무협약
- 2015.10. 평생교육사협회 업무협약
- 2016.10. 제1회 서울평생학습 대토론회 개최
- 2017.10. 모두의 학교 개관
- 2017.12. 조직개편(2국 6팀)
- 2018. 4. 서울 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개관
- 2019. 7. 제2대 김주명 원장 취임.

- 진흥원은 평생교육의 네트워크 구축, 학습문화 확산 등을 위해 모두의 학교와 서울자유시민대학 등을 운영하고,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동단위 마을배움터 등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평생학습의 저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흥원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출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진흥원의 2020년도 출연금은 전년(56억4천만원) 대비 46.6%(26억2천9백만원) 증액된 82억6천9백만원으로 예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인건비(8.1%증가, 1억2천9백만원 증액), 운영경비(40.1%증가, 3억5천3백만원 증액), 사업비(63.1%증가, 19억3천8백만원 증액), 예비비(231.8% 증가, 2억6백만원 증액) 모두 증가하였음.

〈 평생교육진흥원의 연도별 출연금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정)	2019년 대비	
						증감액	증감비율
출연총액	2,320,000	3,799,000	4,678,284	5,639,651	8,268,844	2,629,193	46.6%
인건비	584,741	1,033,991	1,248,822	1,593,395	1,722,661	129,266	8.1%
운영경비	731,769	626,345	741,409	886,329	1,241,437	355,108	40.1%
사업비	890,490	2,094,480	2,348,483	3,070,927	5,009,417	1,938,490	63.1%
예비비	113,000	44,184	339,570	89,000	295,329	206,329	231.8%

- 2020년 인건비 증액은 예비비로 편성한 올해 증원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고, 사업비 증액은 동네배움터 확충예산과 평생교육관련 정책연구, 문해교육 등의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에 필요한 조직구성, 인력 채용 등을 반영하여 운영경비, 예비비도 증액할 예정에 있음.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과제 연구

- 사업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및 진흥원 정관에 평생교육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가 진흥원의 주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다양한 통계·조사·성과분석 연구를 전담하여 담당할 조직이 필요함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발췌 및 요약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 사업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 필요성 : 2019년 『서울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4개년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단계적 실행을 위한 위해 문해교육 전담기구 및 신규 인력 필요. 2022까지 4개 분야 17개 사업(신규 13개) 추진 예정이며, 서울시 문해교육센터 운영 인력 필요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발췌 및 요약

- 상위 법령⁵⁾은 출연금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의 110이상'인 경우에는 출연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 감사보고서⁶⁾를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로 악화되는 지방 재정을 보호하고, 출자·출연기관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한 것으로, 단기적, 집중적 사업보다는 점증적 예산투자로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6)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실태, 2015.3.23.

- 진흥원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46.6%가 증액되었으나, 평생교육국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공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본 동의안을 의회로 제출하였는바, 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을 시의회가 동의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진흥원의 연도별 전년대비 예산증감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예정)
출연액	2,320,000	3,799,000	4,678,284	5,639,651	8,268,844
전년대비 증감	-	63.8%	23.1%	20.5%	46.6%

- 평생교육국은 2017년(2018 평생교육진흥원 출연동의안)과 2018년 (2019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동의안)에도 동 사안을 지적받은바 있으나, 금번에도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법정절차 준수를 위한 전향적인 사무처리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에서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없다는 입장임.

- 출연금 증액의 주요원인은 ‘사업비’이며, 사업비의 대부분은 동네배움터 조성사업으로, 동네배움터는 동단위 평생학습센터로 근거리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2020년까지 동네배움터 200개를 설치한다는 민선7기 공약사항⁷⁾을 2022년까지 424개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단기에 과도한 투자 및 이에 따른 과중한 재정부담은 없는지 등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7)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박원순시장후보 선거공약서 12페이지

〈 동네배움터의 향후 추진계획 〉

사업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100개소	200개소 (누적)	300개소 (누적)	424개소 (누적)

※ 동네배움터 운영 지속성·지립성 확보를 위해 2년 연속 지원

〈 동네배움터 관련 연도별 예산 현황 〉

(단위:천원)

	2018	2019	2020
동네배움터 운영사업	348,980	1,700,560	2,600,230
전년대비 증감액	-	1,351,580	899,670
전년대비 증감율	-	487.3%	152.9%

- 동네배움터와 유사한 사례로 ‘시민력’을 들 수 있으며, 시민력은 서울시 평생교육의 화두였고,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과 관련된 핵심 단어(연구용역의 목적, 필요성, 설립취지, 교육목표 등에 34회 사용)였으며, 평생교육국은 시민력을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현장에 적용하고, 성과분석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2015년부터 진흥원을 통해 다년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나,

※ 시민력의 의미 : 시민력이란 스스로 성찰하여 올바른 삶의 가치체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의 힘을 말한다.(출처 : 서울특별시, 2015,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비 운영방안 마련위한 연구, 29페이지 발췌)

이 용역결과는 서울 정보소통광장에서 모두 비공개 상태⁸⁾이며, 2019년 현재 시민력이라는 단어는 서울시 평생교육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동네배움터가 제2의 시민력과 같은 예산 낭비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평생교육국과 진흥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8) 서울 정보소통광장 : 내부 직원이 선별하여 직접 올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부에서 생산된 행정 정보가 자동으로 인터넷에 공개되도록 처리하는 시스템, 개인정보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투명하게 완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여 시민으로부터 서울시 행정의 신뢰를 얻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 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 서비스 소개.

II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설립 취지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나를 깨우고 세상을 바꾸다

나를 깨운다는 것은 인문학적 성찰을 의미한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시민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평생학습은 시민력(市民力)의 향상을 지향한다.
시민력의 향상은 인간화의 시대를 열어간다

출처 : 서울특별시, 2015,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비 운영방안 마련위한 연구, 5페이지 발췌

시민학습권 보장 및 시민력 강화를 위한 [가칭]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운영 기본계획

시민력 향상 및 시민주도의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가칭)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을 설립·운영하고자 함

출처 : (가칭)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운영 기본계획(2015.12., 평생교육담당관-13774) 1페이지 발췌

※ 시민력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 현황

- 2015년 : 시민 의견조사
- 2016년 : 1차 시민력 기준 및 평생학습지수 개발 연구
- 2017년 : 2차 서울형 평생학습지수 개발 2차년도 연구 용역

※ 시민력 추진성과 : 서울형 평생학습지수(안) 개발

출처 : 2018년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진흥원 제출자료 721페이지 발췌

- 예산 증액의 또 다른 이유는 신규 조직 설치 및 인력채용으로, 진흥원의 정책·연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팀과 문해교육을 총괄할 문해교육팀을 신설·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뿐만 아니라 운영경비, 예비비 등도 함께 증액되었음.

- 정책·연구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당초 서울연구원의 부속시설이었던 진흥원의 개원당시 주요기능은 ‘평생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기초조사 등 연구 기능⁹⁾’이었고, 조례도 정책개발 및 연구를 진흥원의 첫 번째 사업¹⁰⁾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평생교육의 핵심개념인 ‘시민력’에 대한 사항이나, ‘자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도’¹¹⁾도 타 기관에 의뢰할 정도로 연구기능이 삭제되었거나, 축소되었는바, 진흥원이 설립목적에 따라 제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부수적으로, 진흥원의 설립으로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의 주요사업(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평생교육 성과공유,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등)은 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영어·창의마을(민간위탁), 민주시민교육(민간위탁), 고등학교 멘토링(자치단체경상보조), 평생학습포털(유지보수 용역) 등의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바, 진흥원의 정책·연구기능 강화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서울시 평생교육에서 평생교육국이 ‘정책’분야에 대한 역할 축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종합적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이라는 분야에서 평생교육국은 진흥원의 재정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진흥원은 정책·연구 기능이 축소 또는 삭제된 상태로 단기적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태가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인지, 아니면 표면상의 성과만을 위한 사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9) 2015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 설명서 발취,

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사업)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이하 생략)

11)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2018.8.14.

- 동네배움터 사업은 단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예산 증액의 범위(전년 예산의 100분의 110)를 매년 초과하여 추진되고 있는바, 전년 대비 증액된 규모에 대한 타당성 심의, 정상적인 증액 외 부분에 대한 예산조정의 필요성 및 동네배움터 전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진흥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합목적성, 사업 추진 수단의 효율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집행절차의 합법성, 사업결과의 효과성 여부 등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검증과 함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흥원의 기능, 평생교육국 역할 등을 고려한 평생교육 사업추진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총 13인 (선출이사는 9명, 당연직 이사는 4명)으로 진흥원의 이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이사 중 5명의 임기만료 후 장기간 위촉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진흥원의 운영 및 평생교육사업의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활한 평생교육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 내실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의 임기 및 공석 현황 〉

제1기 이사회			공석일수	제2기 이사회		
임기시작일	임기만료일	성명		임기시작일	임기만료일	성명
2015.3.5	2018.1.17	윤00	534	2019.7.5	2022.7.4	양00
2015.3.5	2019.7.4	김00	0	2019.7.5	2022.7.4	김00
2015.3.5	2018.3.4	박00	연임	2018.3.5	2021.3.4	박00
2015.3.5	2018.3.4	이00	연임	2018.3.5	2021.3.4	이00
2015.3.5	2018.3.4	최00	연임	2018.3.5	2021.3.4	최00
2015.3.5	2018.3.4	리00	488	2019.7.5	2022.7.4	조00
2015.3.5	2018.3.4	이00	488	2019.7.5	2022.7.4	이00
2015.3.5	2018.3.4	정00	488	2019.7.5	2022.7.4	리00
2015.3.5	2018.3.4	정 0	488	2019.7.5	2022.7.4	조00
당연직 -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당연직 -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국장						
당연직 - 서울시 재정기획관						
당연직 - 서울시 평생교육과장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
---------	-------	-----------	-------